

행 정 자 치 부

훈계 · 시정 요구

제 목 건설현장 내 안전사고 발생에 대한 행정처분 소홀

기 관 명 경기도

관 계 기 관 원주시, 삼척시, 인제군, 양구군, 평창군, 정선군

관 련 자 양구군 ○○○○과

지방○○○○○ ○○○

내 용

지방○○○○○ ○○○은 2007. 9. 1.부터 2016. 1. 5까지 수해복구공사 감독을 담당하였다.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르면 중대재해란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재해, 3개월 이상의 요양이 필요한 부상자가 동시에 2명 이상 발생한 재해, 부상자 또는 직업성 질병자가 동시에 10명 이상 발생한 재해를 말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31조에 따르면 시·도지사는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건설공사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危害)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에 건설기술용역업자가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할 수 있으며

같은 법 시행령 제46조에 따라 건설기술용역업자에 대한 행정처분기준⁹⁴⁾에

94) 고의 또는 과실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거나 발주청에 재산상의 손해를 발생하게 하거나 사람에게 위해를 끼치거나 부실공사를 초래한 경우: 1) 주요 구조부의 붕괴로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 제7호에 따른 중대재해가 발생하게 하는 등 사람에게 위해를 끼친 경우는 영업정지 12개월, 2) 주요 구조부의 구조안전에 중대한 결함이 있는 경우에는 영업정지 6개월, 3) 주요 구조부의 문제로 인근 주요 시설물의 구조안전에 영향을 끼치

따라 영업정지 등 처분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같은 법 제53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민간투자사업 포함)과 인·허가기관의 장은 건설업자, 주택건설등록업자, 건설기술용역업자(건축사사무 소개설자 포함) 및 고용된 건설기술자가 건설기술용역, 건축설계, 「건축사법」 제2조제4호에 따른 공사감리 또는 건설공사를 성실하게 수행하지 아니함으로써 부실공사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부실의 정도를 측정⁹⁵⁾ 하여 벌점을 주어야 하고

같은 법 제54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군수·구청장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설공사에 대하여는 현장 등을 점검할 수 있으며, 현장 점검 결과 필요한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시정명령 등의 조치를 하거나, 관계 기관에 대하여 관계 법률에 따른 영업정지 등의 요청을 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다.

또한, 「건설기술진흥법」 제62조부터 제65조까지, 같은 법 시행령 제98조부터 제101조에 따르면 건설업자와 주택건설등록업자는 안전점검 및 안전관리 조직 등 건설공사의 안전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발주자에게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 경우에는 발주청이 아닌 발주자는 미리 안전관리계획의 사본을 인·허가기관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안전점검 시기 방법 등 그에 따른 직무를 충실히 수행하여야 하고, 안전관리계획 수립·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안전점검을 하지 아니한 건설업자 및 주택건설등록업자에게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되어 있으며

는 등 사람에게 피해를 끼친 경우에는 영업정지 3개월 등

95) 부실측정 대상사업에는 총용역비가 1억5천만원 이상인 설계 등 용역 및 「건축사법」 제2조제3호 등에 따른 설계(이하 "건축설계"라 한다), 건설공사의 감리, 총공사비(관급자재비를 포함한 총사업비에서 토지 등의 취득·사용에 드는 보상비를 제외한 공사비를 말한다. 이하 같다)가 50억원 이상인 토목공사, 총공사비가 50억원 이상이거나 건축물의 바닥면적(연면적) 합계가 1만 제곱미터 이상인 건축공사, 그 밖에 발주청 또는 건설공사의 허가·인가·승인 등(이하 "허가등"이라 한다)을 한 행정기관의 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설계 등 용역, 건축설계, 건설공사의 감리 또는 건설공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47조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 발주청 및 인·허가기관의 장은 법 제53조제1항에 따라 건설공사 등의 부실의 정도를 측정한 경우(별점을 부과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그 측정 결과를 관리하여야 하며, 별지 제37호서식 및 별지 제38호서식의 별점 총괄표를 매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달 15일까지 영 제117조제1항에 따라 별점의 종합관리를 위탁받은 기관에 통보하여야 한다.

또한, 「부실 별점 운영 요령」에 따르면 측정기관이 부실사항을 인지한 후 해당 반기내 별점을 부과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며, 건설공사 현장 등 점검 시 ‘건설업자·주택건설등록업자 및 건설기술자에 대한 별점측정기준’에 따라 부과하여 하며, 지적된 내용과 주요 부실내용이 일치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지적된 내용과 가장 유사한 부실내용의 별점을 부과 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양구군 ○○○○과에서는 2013. 10. 29.부터 2014. 7. 10까지 ○○리(군도0호선)수해복구공사(850백만원)를 (합)○○○○○○(대표 : ○○○)와 계약 체결하여 추진하였다.

위 사업장에서 2014. 3. 6. 낙석방지망 작업중에 ○○○씨가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으며, 2014. 4. 11. 동 사업장에서 추락방지 안전시설물인 비계를 설치하기 위하여 옹벽상단 토사제거 작업중에 ○○○씨가 안전부주의에 의한 사망사고가 발생하였다.

특히, 양구군 ○○○○과 경우에는 동 현장에서 2건의 안전사고가 발생하였음에도 중부지방고용노동청 ○○지청에서 “전면 작업중지 명령서”를 받았다는 사유로 부실별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

아울러 [표 1]과 같이 양구군 등 6개 시·군에서는 총 9명의 사망사고가 발생했음에도, 건설현장 안전사고에 대해 부실별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하지 않는

등 관련 업무를 해태한 사실이 있다.

[표 1] 건설현장 사망사고 현황

발주 (허가)	부서	공사명	연면적 (바닥면적)	도급자 (시공사)	공사 기간	공사비 (억원)	재해일시	사고내용	행정처 분내용	당시 담당자
○○군	○○○○ 과	○○리 (군도0호선) 수해복구공사	계단식옹벽 L=56m 낙석방지망A=28 49㎡	합○○○○ ○○	'13.10~ '14.07	7	'14.03.06	낙석방지망작업추 락사망1명(○○○)	해당사 항없음	○○○
○○군	○○○○ 과	○○리 (군도0호선) 수해복구공사	계단식옹벽 L=56m 낙석방지망A=28 49㎡	합○○○○ ○○	'13.10~ '14.07	7	'14.04.11	옹벽작업시추락 사망1명(○○○)	해당사 항없음	○○○
○○군	○○○○ 소	○○리 ○○○ 소규모수도시설 공사	1,823㎡	(주)○○○○	'14.06~ '14.12	27	'14.07.26	개인부주의(교통사 고)사망1명(○○○)	미처분	○○○
○○군	○○○○ 과	○면 ○○○○○○○○ 외벽보수공사	0	주식회사 ○○○○	'15.04~ '15.06	0.26	'15.05.19	추락사 사망1명(○○○)	미처분	○○○
○○시	○○○○ 과	○○수변공원조성공 사	49,183㎡	(주)○○	'07.10~ '14.04	141	'13.09.10	관로매설 작업중 추락사고 사망1명(○○○)	미처분	○○○
○○○○ 건설(주) (○○시)	○○과	○○○○지사 합숙소신축공사	3,507.86㎡	○○○○건 설(주)	'14. 4~ '15.03	36	'14.12.25	안전조치미흡 사망1명(○○○)	미처분	○○○
(주)○○건 설 (심척시)	○○과	○○리조트 신축공사	93,375.42㎡	(주)○○건 설	'14.03~ '16.07	1,607	'15.10.29	안전조치미흡 사망1명(이용학)	미처분	○○○
○○군	○○○○ 과	○○지구 우수저류시설 설치공사	우수저류시설1,44 0㎡, 고지배수로 L=65m	(주)○○○○ ○○	'14.12~ '15.10	38	'15.05.17	건설크레인 파손에 의한 사망1명(○○○)	미처분	○○○
(주)○○○ ○○ (○○군)	○○○○ 과	○○○○○○○○○○ ○○ 신축공사 중 조경공사	24,947.09㎡	○○○○ 주식회사 (○○○○)	'14.03~ '16.06	614	'16.07.13	현장부지 외 도로에서 지게차 내리막길 주행 중 브레이크 이상 사망1명(○○○)	미처분	○○○

조치할 사항 원주시장, 삼척시장, 인제군수, 양구군수 정선군수, 평창군수

[훈계] 위 관련자를 훈계처분 하시기 바랍니다.

[시정] 건설현장 사망사고에 대해 현장에 대해서는 「건설기술진흥법」 등에 따라 안전점검을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부실벌점 부과 등 행정처분을 조치하시기 바랍니다.